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14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송기헌・박정하・백혜련

주철현 · 강훈식 · 김태년

위성곤ㆍ허 영ㆍ박 정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몰군경의 유족 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

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및 제7항).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를 "대통령령으로"로, "감면(減免)하며"를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 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액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7 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75세"를 각각 "65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진료) ① ~ ④ (생 략)	제42조(진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			
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감면(減免)하</u>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		
<u>며,</u>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	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		
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	<u>위에서 감액하며</u>		
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7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			
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다.			

- 1. ~ 2. (생략)
-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 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 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 람 중 선순위자로서 <u>75세</u> 이 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 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 항을 준용한다.

⑧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65</u>
세
4
<u>65세</u>
⑧ (현행과 같음)